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및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도입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20.10.8 시행 예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의 위촉 등(안 제7조의2)

자동차보험정비요금과 관련된 보험업계-정비업계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법률에 따라 구성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의 위촉방법 및 해촉 사유를 규정

나.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안 제11조의5)

공정하고 원활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해 업무관련 비위, 출석을 저조 등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해촉사유를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의 위촉 등) ① 법 제1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위원은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업계를 대표하는 위원은 「자동차관리법」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③ 법 제1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을 담당하는 사람
2.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보험업법」을 담당하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대학에서 자동차보험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대학에서 자동차정비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5.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는 사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6호”를 “법 제25조제8호”로 한다.

제1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5(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 영 제33조의12

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연간 위원회 출석률이 3분의2 미만인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전문성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사고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인정한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15조제2항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4. (생략) 5. <u>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산정</u> · 지급하는 「의료법」 제46조제5항에 따른 추가비용에 관한 사항 <u><신 설></u>	제7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 ----- -----. 1. ~ 4.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제7조의2(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u> <u>위원의 위촉 등) ① 법 제15조</u> <u>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보험업</u> <u>계를 대표하는 위원은 「보험업</u> <u>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u> <u>해보험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u> <u>에서 위촉한다.</u> ② 법 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u>따른 정비업계를 대표하는 위원</u> <u>은 「자동차관리법」 제68조에</u> <u>따라 설립된 연합회에서 추천한</u> <u>사람 중에서 위촉한다.</u> ③ 법 제15조의2제2항제3호에 <u>따른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을 담당하는 사람

2.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보험업법」을 담당하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부터 제6호에 따른 대학에서 자동차보험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부터 제6호에 따른 대학에서 자동차정비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5.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는 사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9조(의무보험 계약의 해제 가능 사유) 법 제25조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략)

<신설>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의무보험 계약의 해제 가능 사유) 법 제25조제8호-----

-----.

1. ~ 3. (현행과 같음)

제11조의5(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 영제33조의12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연간 위원회 출석률이 3분의 2 미만인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전문성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

	<u>원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사고</u> <u>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인정한</u> <u>경우</u>
--	--